

“2025년 화학물질 관리체계 전면 개편으로 기업의 제도이행방법 점검 및 재정비 필요”

‘25.8.7.일부터 화학물질 관리체계가 전면 개편·시행됩니다. 화학안전연구소는 국내 최고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력을 발휘하여, 우리나라 화학산업이 새로운 체계에 빠르게 적응하고, 선제적으로 규제 대응이 가능하도록 컨설팅 지원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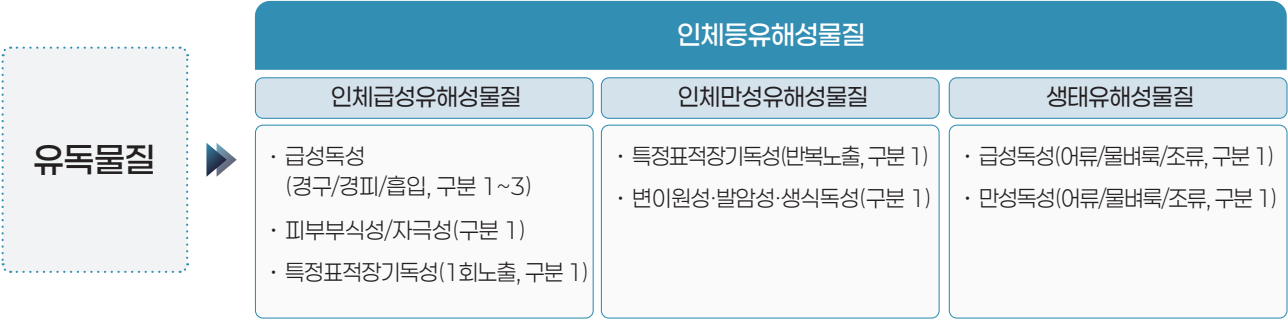
컨설팅 및 견적 문의

TEL 02-6264-3772 / 3775 / 3776

E-mail zooo1900@koreacsi.kr / chohn0219@koreacsi.kr / bjn2888@koreacsi.kr

화학물질등록평가법(화평법) 개정·시행

· 유해성물질 지정체계 개편 ▶ 물질별 함량기준 변동, 유해성 분류·표시 변경



· 신규화학물질 등록·신고제도 개선

구분	개정 전	개정 후
등록대상	연간 100kg 이상 제조·수입하려는 신규화학물질	연간 1톤 이상 제조·수입하려는 신규화학물질
신고대상	연간 100kg 미만 제조·수입하려는 신규화학물질	연간 1톤 미만 제조·수입하려는 신규화학물질

· 신규화학물질 신고자료 검토와 정보공개

신고 주요 내용	자료검토와 정보 공개
· 신고인 정보, 식별정보(명칭, CAS No., 구조식, 순도 등), 연간 제조·수입 예정량, 유해성 분류·표시 및 작성사유, 유해성미확인물질 해당 여부 등 · 변경신고 대상: 신고한 화학물질의 분류·표시가 변경된 경우, 위해성에 관하여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,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, 기타 신고인 정보가 변경된 경우 등	· (자료검토)신고된 자료 외에 국내외 정부나 국제기구 등이 평가한 신뢰성 있는 유해성 관련 추가자료가 있는 경우 신고인에게 변경신고 권고 · (정보공개)명칭 및 고유번호, 용도분류체계상의 용도, 분류·표시 및 작성사유

· 유해성미확인물질과 정보제공의무 신설

유해성미확인물질 (고분자화합물 제외)	사업자의 의무
· 급성경구독성을 확인하지 못한 물질(상온에서 기체 또는 주된 노출경로가 흡입인 경우 급성흡입독성) · 피부부식성을 확인하기 곤란한 물질 · 복귀돌연변이 및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 이상을 모두 확인하지 못한 화학물질(생식세포변이원성, 발암성, 생식독성, 시험동물을 이용한 체세포 유전독성 시험결과를 확인한 화학물질은 적용 제외) · 어류·물벼룩급성독성 및 담수조류 성장저해를 모두 확인하지 못한 화학물질 · 이분해성을 확인하지 못한 화학물질(무기물, 물용해도 1 mg/L 미만, 중간체 또는 공정속도조절제의 용도로만 사용하려는 물질은 적용 제외)	· 유해성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는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적절한 조치 · 물질 및 혼합물의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공

화학물질관리법(화관법) 개정안 주요 내용

· ‘유해화학물질’ 용어정의 변경 ▶ 인체등유해성물질(인체급성유해성물질/인체만성유해성물질/생태유해성물질), 사고대비물질



·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관리 개선(영업허가, 영업신고, 판매업신고)



· 금지·제한·허가물질 제도 개선

금지물질 허가대상 확대	제한물질 허가·신고 전환	허가물질 면제·신고대상 추가
· (종전)시험·연구·검사용 시약 제조·수입·판매 · (추가)국외 전량 수출하기 위한 제조·수입	· (허가)제한된 용도 전량 수출목적 제조·수입 · (신고)제한되지 않은 용도로 취급하려는 경우	· (면제)기계 내장, 시험운전용, 완제품, 조사·연구용, 연간 100kg d이하, 소비생활용 물질 · (신고)국외 전량 수출하기 위한 제조·수입, 시험·연구·검사용 시약 제조·수입·사용

· 규정수량과 화학물질 안전관리체계

취급시설 정기검사	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	유해화학물질별 규정수량	유해화학물질 영업자
위험도(가)1년 위험도(나)2년 위험도(다)2년	1군 사업장	상위규정수량	영업허가
3년	2군 사업장	하위규정수량	영업신고
4년	면제사업장	최하위규정수량	허가/신고 면제
설치/정기검사 면제			

한 번에 1톤 초과 운반 영업자

판매업 신고

시약판매 / 취급시설 없는 판매 (규정수량 없음)

제도 개편에 따른 기업의 준비 사항

취급물질 인벤토리 구축 또는 재검토

- 유해성미확인물질 확인
- 유해화학물질 구분 및 함량기준 변경 확인
- 유해성 분류표시 변경사항 확인
- 취급시설 정기검사/안전진단 기한 확인
- 관리자와 담당자 등 사내 교육

제도이행 세부계획 수립 및 실행

- 사내 화학물질관리 전산시스템 개편
- 상하위 공급망 취급화학물질 재분류 요청
- MSDS개정 및 공급망 내 정보제공
- 용기·포장 및 취급시설의 표시사항 변경 부착
- 국외 원료공급자의 국내대리인 선임여부 확인 및 대응

경과규정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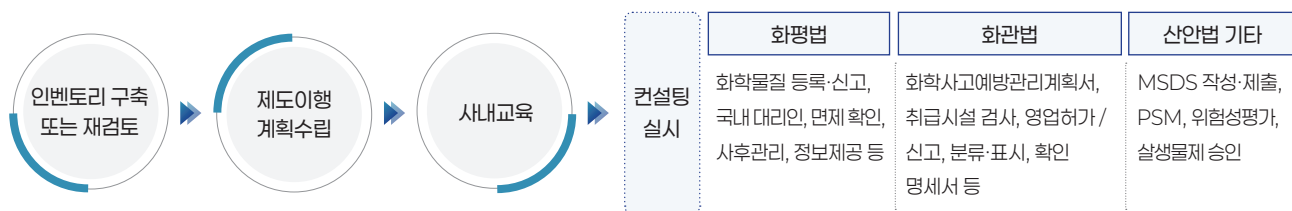
-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 : 2027.8.6.일까지
- 시약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및 안전교육 이수 : 2026.8.6.일까지
- 금지·제한·허가물질의 전량수출용 허가 또는 신고를 위한 사전준비
- 제한물질의 제한되지 않은 용도 취급에 따른 영업신고 : 2026.8.6.일까지

그 밖에 개정된 법률에 따른 변경사항 대응

- 배출저감계획서 제출시기 변경(4/30 → 5/31), 변경검토신청서 제출 대상 해당 여부 확인
-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, 취급시설 설치·관리기준 변동사항 확인
- 취급시설 기준 특례적용과 안전성평가 대상 확대에 따른 개정사항 확인
- 유해화학물질 판매자의 고지의무 이행(정보요약서 제공, 판매장 입구 게시, 홈페이지 게재)

화학안전연구소(CSI) 사업분야와 업무역량

- 사업분야 및 컨설팅체계



- 최근 사업실적

연구용역	• (2024)제한물질 등 위해성물질 지정제도 개선방안 마련 • (2024)유해화학물질의 유해 특성별 분류(안) 마련에 따른 분류·표시 목록 개편 • (2024)중점관리물질 목록 개편안 마련 • (2023)유독물질 지정체계 개편방향에 따른 목록 검토 및 유해 특성별 분류
기업컨설팅	• (2024)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(17개 물질), 신규화학물질 신고 컨설팅(80개 물질) • (2024)화학물질 인벤토리 구축·관리,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, MSDS작성·제출(약 30건) • (2024)살생물제 승인전략 수립 컨설팅(7개 기업) • (2023)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지원 및 특별안전교육(30개 기업)
지식개발	• 기존화학물질 국제적 평가보고서 조사 및 DB 구축(유해성 항목 6,580건) • AI기반 화학물질 독성예측시스템 구축 추진(2025~2029)

- 핵심보유인력

화학물질 등록/신고 분야



- 김필제 원장 (농화학 박사, 서울대)
- 국립환경과학원(30년)/위해성평가연구과장
 - 화학물질 유해성/위해성 평가방법론 정립
 - 화평법 등록평가제도 도입 및 법령 제정 참여
 - 화학물질 약 7,000종 유해성 심사·평가

화학물질 안전관리 분야



- 조정후 대표 (환경 및 산업보건학 박사, 고려대)
-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(25년)/본부장·상무
 -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제·개정('13)
 - K-Chesar 위해성평가도구 개발('15~'17)
 - KORA 장외영향평가도구 개발('14~'17)